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)
- 나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에 대한 규정 정비)
- 다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규율위원회 사전통지시한 확대)
- 라.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(전자금융거래 관련 이용자와의 분쟁처리 절차와 방법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3/4/12 개정 · 2023/6/2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신규상장종목에 대한 신속한 균형 가격의 발견 및 투자자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주권 등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 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가) 신규상장하는 주권 및 외국주식에탁증권(이하, 신규상장종목)의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

- 신규상장종목에 대한 기준가격의 결정방법 개선
 -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라 신규상장일의 기준가격을 정하지 않고, 모집 또는 매출 시의 발행가액 등을 기준가격으로 설정(제30조 제1항, 별표 1 및 별표 1의4)
 - (기존) 시가기준가 방식은 발행가액(평균가격)에 따라 정해지는 최저호가가격(종류주식 : 50% 또는 보통주식: 90%) 및 최고호가가격(200%)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고, 제23조에 따른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가격(시가)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는 방식
 - 모집 또는 매출 시의 발행가액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 이후에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주권의 경우
 - 배당산입기간에 차등이 있는 다수 주권을 동시에 상장하는 경우 배당산입기간이 가장 긴 종목의 기준가격을 타종목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삭제(제14조 및 제30조)
 - 상장규정(제24조)은 배당기산일이 다른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장 실무상 배당기산일이 다른 주권을 동시에 신규상장한 사례가 없음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— 종류주식의 신규상장 시, 모집 또는 매출 시의 발행가액을 기준 가격으로 적용(제30조 및 별표 1의4)

신규상장일 종류주식의 기준가격	
모집 · 매출 O	모집 또는 매출 시의 발행가액*
모집 · 매출 X	① 동시 상장하는 동일유형 종류주식이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, 해당 발행가액
	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보통주식의 기준가격. 다만, 동일유형 종류주식 기상장된 경우, 해당 종류주식의 기준가격

* 모집 · 매출 여부를 불문하고 기상장된 동일종류(권리내용 동일)의 종류주식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을 삭제

□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 확대

— 신규상장일에 기준가격 대비 60~400%로 상 · 하한가를 확대하여 적용(제31조 제3항)

- (기준) 기준가격 대비 ±30%(평가가격의 63~260%)

신규상장종목의 호가가격 범위		
상한가	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(기준가격에 3을 곱한 가격)을 더한 가격 (기준가격+3×기준가격)	400%
하한가	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(기준가격에 0.4를 곱한 가격)을 뺀 가격 (기준가격-0.4×기준가격)	60%

□ 종류주식 대응가격의 사정비율 개선

— 신규상장일에 적용하는 종류주식 대응가격의 사정비율을 보통 주식과 동일하게 70%로 적용(제119조)

- 신규상장일의 사정비율: (기준) 보통주식70%, 종류주식30% → (개정) 보통·종류주식 70%

□ 시가기준가종목에서 신규상장종목을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

- 기존과 같이 시가 결정 시 차입공매도 호가, 시장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 호가 제한(제14조)
- 기존과 같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및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 적용 제외(제24조의3 및 제54조)

나) 시가기준가종목 조문 정비

□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에 대한 조문 정비

- 시가기준가종목 정의 신설 및 시가기준가종목의 기준가격 관련 조문 정비(제2조, 제13조,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제55조 제1항)
 - 시가기준종목은 ①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, ② 투자회사주권 등으로 분배배당금액이 일정 가격제한폭을 초과하는 종목, ③ 자본금감소 종목, ④ 병합·분할된 상장지수증권, ⑤ 매매거래재개종목
-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 가격결정을 위한 평가가격,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조문 정비 (별표 1)

다) 기타 조문 정비

□ 신규상장종목 및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조문 정비

- 호가 접수시간을 세칙 제35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, '단일가매매 참여호가 범위 확장'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조문 정비(제55조 제2항)
 -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간 동안 접수된 호가
- 신규상장종목 및 시가기준가종목의 가격 결정을 위해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를 명확화(제55조 제3항)

□ '신주상장' 용어 삭제

- 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」과 불일치하고 '신규상장'과 혼용되던 '신주상장' 용어를 삭제(제30조 제1항 제8호, 제115조의4 및 제129조)
 - 보통주가 상장되어있는 상황에서 종류주식을 최초로 상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장규정에 없는 '신주상장' 용어를 사용하여 신규상장과 혼용

□ 인용조문 등 기타 조문 정비

- 신규상장종목 및 시가기준가종목 관련 인용조문 변경 등 조문 정비(제30조, 제34조, 제36조, 제57조, 제99조의21 및 제119조)
- 기타 조문 정비(제24조의3, 제31조, 제115조의4)

나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3/4/12 개정 · 2023/6/2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신규상장종목의 신속한 가격발견 및 공정한 거래기회 제공을 위하여 주권 등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, 기준가격 및 시가기준가종목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가) 신규상장하는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(이하, 신규상장종목) 등의 최초 가격 결정 방법 개선

□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 방법 개선

- 최초 가격 결정을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,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가격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(제17조 제1항, 별표 1 및 별표 1의4)

— 신규상장종목에 적용되는 호가 범위 추가(제27조 제4항)

□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 변경(제17조의2 제2항)

— 신규상장일의 기준가격 대비 60~400%로 상한가 및 하한가를 확대하여 적용

신규상장종목의 호가가격 범위		
상한가	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(기준가격에 3을 곱한 가격)을 더한 가격 (기준가격+3×기준가격)	400%
하한가	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(기준가격에 0.4를 곱한 가격)을 뺀 가격 (기준가격-0.4×기준가격)	60%

□ 신규상장종목의 시가 결정 시 호가 입력 제한 등 관련 제도 정비

- 시가 결정 시 차입공매도 호가, 시장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 호가가 제한되도록 호가입력 제한 사항 정비(제8조)
- 공매도 과열종목에서 제외되도록 조문 정비(제8조의5)
- 시간외매매의 적용 중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신규상장종목이 제외되도록 조문 정비(제26조)
- 신규상장일에 적용하는 종류주식 대응가격의 사정비율을 보통
 - 주식과 일원화(제48조)
 - 신규상장일의 사정비율 : (기존) 보통주식 70%, 종류주식 30% → (개종) 보통·종류주식 70%

나) 시가기준가종목 규정 정비

□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에 대한 규정 정비

- 시가기준가종목 정의 신설 및 시가기준가종목의 기준가격 등 관련 규정 정비(제2조, 제8조,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7조 제1항)
 - 시가기준가 종목 :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별표 1에 따른 최저·최고호가가격 이내의 호가 범위에서 규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결정된 가격을 그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종목
 -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 : ①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, ② 자본금감소 종목, ③ 매매거래재개종목
-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 가격결정을 위한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기준에 관한 규정 정비(별표 1)
 - 최초의 가격결정방법의 호가접수시간 내용 정비(제27조)

다) 기타 조문 정비

- 평가가격 및 기준가격 관련 시장조치 명확화(초저가 제3차 배정 유상증자 등 중 권리락 조치 등)를 위한 규정 정비 (별표 1, 별표 1의4)

다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3/4/11 개정 · 2023/5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규율위원회에서의 사전통지시한을 시장감시위원회에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회원사의 방어권 및 규율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규율위원회 사전통지시한 확대
 - 규율위원회의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시장감시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

라.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(2023/4/27 제정 · 2023/5/2 시행)

1) 제정 이유

-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이용자와의 분쟁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정의(제2조)
 -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전부·일부 기능이 정지되거나 오작동으로 인해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전산장애로 규정
- 손해배상의 신청(제3조)
 -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손해배상 신청 서식에 맞게 거래소 회원업무지원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
- 손해배상의 심사(제5조)
 - 손해배상 여부, 손해배상 대상, 손해배상 범위 등의 심사는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시장운영부서 및 전산업무 담당부서에서 협조

□ 손해배상금 확보 및 집행(제6조)

- 거래소는 매년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, 해당 손해배상금의 집행은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에서 담당

□ 손해배상 인정 예외사유(제7조)

- 거래소가 전산장애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, 장래 기대이익의 경우 등은 손해배상 인정 예외

□ 전자금융거래 민원(제9조)

- 손해배상 신청 외에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당한 의견 및 불만은 「민원업무처리규정」에 따라 접수 및 처리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